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동윤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700

발의연월일 : 2025. 8.
발의의원 : 신동윤 의원,
곽동환 의원, 전홍배 의원

1. 개정이유

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, 군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며, 개방된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사용허가 기준 마련 및 적용 전 공개 근거 신설(안 제4조제3항~제4항)

나. 경합 시 달성군민 우선권 부여 및 적용기준 명확화(안 제5조제2항~제3항)

다. 파크골프장 개방시간·이용절차·방법 기준 마련 근거 신설(안 제6조제4항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시설의 질서유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시간대별 허가의 대상, 허가시간, 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전 상당 기간 전에 그 기준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”을 “2인(단체)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”으로 하며, **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시 필요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시간, 이용절차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용허가) ①·② (생 략)	**제4조(사용허가)**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군수는 시설의 질서유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시간대별 허가의 대상, 허가시간, 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.
<신 설>	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 전 상당 기간 전에 그 기준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	**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** ① ----------2인(단체)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	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시 필요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.
제6조(시설의 개방) ① ~ ③ (생략)	**제6조(시설의 개방)**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시간, 이용절차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(2024.10.22. 일부개정, 2025.4.23. 시행)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2024.8.28. 일부개정, 2026.1.1. 시행)

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,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